

부산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35192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청률

담당변호사 허민

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

담당변호사 남재훈, 채동우, 류흥수

변 론 종 결 2024. 3. 26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9. 6. 23. 접수 제275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9. 6. 23. 접수 제275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김정우

별지